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0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박희승 · 이해민
이수진 · 남인순 · 황운하
정준호 · 김준형 · 한창민
서왕진 · 손명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, 액화석유가스(LPG)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).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의2 중 “사람이”를 “사람 및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이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“계층(이하 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”이라 한다)에”를 “계층(이하 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”이라 한다) 및 다자녀가구에”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“사람으로서”를 “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7의2. “에너지이용권”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<u>사람이</u>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)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(이하 “에너지복지 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<u>계층(이하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7의2. ----- ----- -----<u>사람 및</u> <u>다자녀가구의 구성원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의2(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계층(이하</u></p>

<p><u>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”이라 한다)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</u></p> <p>2.·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<u>사람으로서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<u>“에너지이용 소외계층”이라 한다) 및 다자녀가구에-----</u>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의3(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) ① ----- ----- ---<u>사람 또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으로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